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의무 및 시정명령·과태료 조치 >
■ 윤후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44호)

2025.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전완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의무 및 시정명령·과태료 조치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1. 6.
3. 회 부 일: 2025. 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대수명의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체력단련장 등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료를 선불로 받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한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 소비자원 등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중단으로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를 선불로 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의무 및 시정명령·과태료 조치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안 제26조제2항 신설, 제30조제8호, 제40조제1항 등).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보다 일반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u>“선불이용료”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에 따라 미리 지급한 3개월 이상의 이용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차 이용료를 말한다.</u>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 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단서 신설>

가.·나. (생략)

5. (생략)

② (생략)

제26조(보험 가입) (생략)

<신설>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 다만,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때에도 약정기준이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보다 일반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보험 가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제2조제6호의 선불이용료를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신설> 5.·6. (생략) ② (생략)	<u>받은 체육시설업자는 제22조 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이용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u> 제30조(시정명령)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제40조(과태료)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6조제1항----- ----- 4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의견

- 현행법상 체육도장업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또는 시설 내 피해 보상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¹⁾
- 이에 2023년 기준 손해보험 가입의무 대상 체육시설은 2,963개이며, 2024년 기준 지자체에서 자체 관리 중으로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719개소 중에서는 714개소가 가입하였음.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보험 가입) 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3., 2019. 6. 25.>

1. 등록 체육시설업자 : 시·도지사

2. 신고 체육시설업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손해보험 가입의무 대상 체육시설]

연도	2021	2022	2023
가입의무 대상 체육시설 수(단위: 개소)	2,709	2,777	2,963

*가입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법 제30조제8호), 등록취소등(법 제32조제2항제6호), 과태료(법 제40조제1항제4호) 등 조치 관련 현황 자료 없음

**지자체에서 체육시설 등록·신고 시 보험가입 현황을 입력하고 있으나, 현행화가 필요하여 행안부 ‘재난 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해당 현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

***체육시설 보험가입의무 준수여부를 안전점검(반기별 1회) 시 확인하고 있으며(법 제4조의3,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등), 2024년 기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점검 대상 체육시설(국가 설치·운영 공공체육시설 및 문체부장관이 고시한 안전관리 취약 시설)의 경우 719개소 중 714개소가 가입 완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그런데, 체육시설 휴·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료 반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 손해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에게 이용료 반환 관련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가 별도의 이용료 반환기준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²⁾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료 반환기준 대비 불리한 약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확대하려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현행법에 따라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음(법 제30조제6호).

2) [참고자료1] 이용료 반환기준

- 이 때,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현행법에 따라 등록취소·영업폐쇄 명령·영업정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법 제32조제2항), 영업 폐쇄명령·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도 될 수 있음(법 제38조제2항 제3호).
- 체육시설에 수 개월 단위의 선불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등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1)보증보험 가입의무와 관련하여, 시행예정법률의 효과, 보증보험 가입료의 예상 가격전가율 및 가입 대상 범위, 안심결제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효과, 가입 여부에 대한 실효적인 점검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우선, 이용료 반환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업자에게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³⁾이 2024. 9. 26.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 4. 23. 시행 예정인바, 혼란 방지 및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동 제도의 시행 및 효과 검증 후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3) 김영배의원안(2201550), 2024.7.10. 제안

- ‘선불이용료’의 정의(안 제2조제6호)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상 ‘이용료’는 ‘일반이용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해석되는 반면⁴⁾ 개정안의 ‘선불이용료’는 정의상 ‘회원’이 지급한 이용료까지 포함하는바, ‘이용료’ 및 ‘선불이용료’의 범위 및 상호 관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해 보임.⁵⁾

[‘이용료’ 및 ‘선불이용료’의 범위]

‘이용료’	‘선불이용료’
일반이용자가 납부한 총 금액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포함, 보증금 제외)	회원·일반이용자가 미리 지급한 3개월 이상의 이용료 또는 회차 이용료 (안 제2조제6호 신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회원”이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의 대가(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을 받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 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각 목 생략)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③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회원
2. 체육시설업자에게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 또는 교습 약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일반 이용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3 관련)

비고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5) 이와 관련하여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골프장 이용 시마다 납부하는 ‘입장료’가 아닌 입회금(보증금)까지 ‘선불이용료’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임.

- 가입의무대상(안 제26조제2항)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고, 보증보험 가입료가 시설 이용료에 반영되어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⁶⁾ 일부 체육시설은 안심결제서비스 ‘킵페이(keepay)’ 가입을 통해 이용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육시설업자가 보증보험 가입과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가입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 마련을 검토할 수 있겠음.⁷⁾⁸⁾

6) 보증보험료의 경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어 중·대형 업체와 비교 시 경쟁력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우려 (문체부)

□ 체육시설 이용료 관련 이행보증보험 현황

○ 현재 체육시설 이행보증보험 상품은 골프장, 승마장 등 2종(서울보증보험) 존재

- 해당 지급보증보험 상품(등록체육시설업)은 회원입회 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체육시설업자가 회원 모집 시 받은 입회금액의 반환을 지급보증하는 상품으로, 선불이용료 반환과 무관
- 골프장의 경우 가입실적 없음

업종	연간 보험료 = 연회비(회원권 가격)×회원수×보험요율	상품명(운영사)
골프장	(예) 848백만원(1억원×500명×1.695%)	지급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승마장	(예) 42백만원(500만원×500명×1.695%)	
(가정) 체력단련장	(가정) 10백만원(100만원×500명×2%*) *등록업 지급보증보험 기본요율 연 1.695%, 인허가보증보험(영업보증금) 기본요율 연 0.227% 등 최대 2% 산정(서울보증보험)	별도 상품 없음

자료: 보험업협회 검토

7)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휴·폐업 등에 따른 ‘먹튀’ 피해가 체력단련장 등 소규모 신고체육시설업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제한하고, ‘안심결제서비스’ 이용 시설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회원제 골프장 153개('24. 기준) 1개소당 연 7.4억 보험료 산출 예상, 골프장 평균 재산세(20억)의 37%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 우려(자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문체부 수정안>

개 정 안	문체부 수정안
제26조(보험 가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제2조제6호의 선불 이용료를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제22조제1항 제4호나목에 따른 이용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보험 가입)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신고체육시설업자는 ----- ----- -----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거나, -----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이와 관련하여 한국체력단련장협회는, 대다수 체육시설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보증보험을 가입

[안심결제서비스 키페이(keepay)]

내용	○ 키페이(Keepay) 앱 가입 시, 체육시설 휴폐업에 따른 먹튀 발생 시 가입 개별 건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 - (사전 위험 고지) 직원 급여 지급, 제세공과금 미납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험 징후 발생 시 이용자에게 업체 경영정보 제공 - (피해구제) 체육시설 먹튀 발생 시, ① 체육시설 휴·폐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상 신청 → ② 운영사 사실 확인 후 타 시설 이용 연계 또는 잔여 이용금액 보상
운영사	(주)Pay+
가입자	'24. 9. 서비스 개시, '25. 1월 기준, 186개소 체육시설 가입
운영 체계	

*주) 문체부 등록법인(「체육시설법」 제34조(체육시설업협회))인 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 개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경과조치 기간(안 부칙 제2조)과 관련하여⁹⁾, 소규모 체육시설 일수록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부담이 크고, 개정안에 따른 보증보험 상품 신규 개발 및 출시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 부칙에 따른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음¹⁰⁾.

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보증보험 보상은 휴·폐업신고서 등 공식 문서 확인 후 개시됨에 따라 오히려 피해보상 장기화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증보험 가입을 대체할 수 있는 상응 조치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9) < 개정안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시설업자 중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0) 이와 관련하여, 일부 경기도 시·군·구 체육시설 관련 부서는, 최소 12개월 이상의 경과기간이

- 덧붙여, 특정 시점별로 선불이용료를 지불한 이용자 수가 달라지는데 시설업자가 항시 정확한 보험규모로 가입하고 있는지 등 실효적인 점검 방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임.

○ 일부 관련 단체는 회원권의 입회금 포함 문제, 환불문제 원천예방 가능, 매출하락 우려 등으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¹¹⁾.

○ 한편,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 대비 불리한 이용료 반환 약정 적용 금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을 따라야 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외에도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포함 되고,¹²⁾ 환급 요청 시 이용기간 과다 공제·이용자에게 신용카드

필요하다는 의견임.

11) ○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개정안의 ‘선불이용료’의 정의가 포괄적이어서, 시설 이용 시 납부하는 ‘입장료’와 별도인, 양도·양수·승계 등이 가능한 재산권인 골프장회원권의 ‘입회금’까지 ‘선불이용료’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 한국스키장경영자협회는 스키장 시즌운영일수 단축으로 시즌권이 ‘3개월이상의 선불이용료’에 해당하지 않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스키장은 시즌권 등 환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 한국골프연습장협회는 현행법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에 따른 사업 승계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 골프연습장업의 매출 하락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수수료 전가·위약금 과다 청구 등 불공정 약관의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에 약관 심사청구 등의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바¹³⁾, 사업자와 시설이용자 간 사적 자치 원칙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제22대 국회에 체육시설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28,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이 문체위에 회부되어 있으며, 제21대 국회에도 이용료 반환기준 및 보증보험 가입의무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

[제22대 국회 유사 법률안 발의 현황]

	강유정의원안 (2204528)	윤후덕의원안 (2207244)
선불이용료 정의	회원·일반이용자가 <u>3개월 이상 체육시설 이용·교습 대가로</u> 미리 지불한 이용료 (안 제26조제2항 신설)	회원·일반이용자가 미리 지급한 <u>3개월 이상의 이용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차 이용료</u> (안 제2조제6호 신설)
이용료 반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료 반환기준 대비 불리한 약정 적용 금지 (안 제22조제1항제4호단서 신설)
보증보험 가입의무	선불이용료를 받은 체육시설업자가 폐업·휴업 등으로 영업 중단 시 <u>이용자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의무</u> (안 제26조제2항 신설)	
시정명령	보증보험 미가입 시 <u>시정명령</u> (안 제38조제2호)	
운영 체계	보증보험 미가입 시 <u>100만원 이하의 과태료</u>	
	(안 제40조제1항제4호)	(안 제4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13) [참고자료5] 「약관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조문

[제21대 국회 유사 법률안 발의 현황]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주요내용(조항)	심사경과
강병원 의원안 (2103687)	• 이용료를 선불로 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안 제26조제2항) •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간 약정한 때에는 약정한 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르되,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을 따름(안 제22조제1항제4호) • 보증보험 미가입 시 시정명령·과태료 조치 신설(안 제30조제8호, 안 제40조제1항제4호) ○법안소위 심사 내용 - <u>체육시설업, 보험업계 등 제반 사항 관련 실태조사 및 개정안 내용 수정(①·②·③)을 위해 추가 논의 필요</u> - ①모든 체육시설업자 대상이 아닌 '선불이용료(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선불로 지불)'를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 검토 - ②행정상 3개월 이상의 선불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업의 선별 가능성 검토 - ③체육시설에 맞는 보험상품 개발(최소 6개월), 체육시설별 보증보험 가입금액 검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2년 뒤 개정규정 시행 필요성 검토	발의(20.9.9.) 상정(20.11.13.) 법안소위 (21.2.24., 21.3.24.) 임기만료폐기(24.5.29.)
홍익표 의원안 (2110690)	• 요가업,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하고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법안소위 심사 내용 - 체육시설을 자유업으로 전환하여 <u>규제를 완화하는 추세, 현재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헬스장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가 논의 필요</u>	발의(21.6.8.) 상정(20.9.13.) 법안소위(22.12.6.) 임기만료폐기(24.5.29.)
류호정 의원안 (2124055)	• 선불이용료* 정의 신설(안 제2조의6)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에 따라 미리 지급한 3개월 이상의 이용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차 이용료 • 약정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보다 일반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의(23.8.29.) 상정·소위원회부(23.11.30.) 임기만료폐기(24.5.29.)

	기준에 따라 반환(안 제22조제1항제4호) • 체육시설업 휴·폐업에 따른 이용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보증보험 가입(안 제26조제2항) • 보증보험 미가입 시 시정명령·과태료 조치 신설(안 제30조제8호, 안 제40조제1항제4호)	
이상현 의원안 (2124443)	• 체육시설업 휴·폐업에 따른 이용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보증보험 가입(안 제26조제2항) • 보증보험 미가입 시 시정명령·과태료 조치 신설(안 제30조제8호, 안 제40조제1항제4호)	발의(23.9.14.) 상정·소위원회부(23.11.30) 임기만료폐기(24.5.29)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1] 이용료 반환기준

○ 현행 규정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1조의3(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 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 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3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2조 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 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이용 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text{반환금액} = [\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경과한기간(일수)}}{\text{계약상이용기간(일수)}})] - \text{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text{반환금액} = [\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이용한횟수}}{\text{계약상이용횟수}})] - \text{위약금}$
2. 법 제22조 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 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나. 이용 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text{반환금액} = [\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경과한기간(일수)}}{\text{계약상이용기간(일수)}})] + \text{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text{반환금액} = [\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이용한횟수}}{\text{계약상이용횟수}})] + \text{위약금}$

비고

1.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자료2] 체육시설 선불이용료 운영 현황(자료: 문체부)

□ 개요

- (배경) 선불이용 체육시설의 '먹튀' 사고 이슈화에 대한 사업자와 이용자 대상의 선불이용 현황 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검토
- (대상) 17개 시도 체육시설업 사업체(체련단련장, 수영장 등 1,500개사), 체육시설업 이용자 1,000명
- (내용) 사업자와 이용자간 선불이용 활용현황, 보증보험의 필요성 등
- (조사) 스포츠정책과학원 / (주)코그니티브컨설팅그룹

□ 주요내용

- (제도이용) 사업자는 3개월 이상 고객과 자금 확보, 이용자는 이용료 할인 등의 장점이 부합하여 운영 중
 - (경험) 사업자 45.3% 서비스 제공, 이용자 86.2% 이용
 - 선불이용료 매출 비중 70~90%가 37.3%, 이용자 목적 76.7% 할인
- (보증보험 필요성) 사업자-이용자 간 응답이 현저히 다름
 - (필요성) 사업자의 71.5% 불필요 응답, 이용자 91.0% 필요 응답
 -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불필요 응답이 높음
 - (보험 부담자) 사업자는 '공동부담', 이용자는 '사업주' 부담 응답
 - 사업자 : 공동부담(사업자+이용자) 61.6% > 이용자 21.5% > 사업주 15.5%
 - 이용자 : 사업주 62.9% > 공동부담(사업자+이용자) 30.8% > 이용자 6.3%
 - (의무화) 사업자의 63.5% 반대, 이용자 89.3% 찬성함
 - 규모가 클수록(5억 이상, 10명 이상 종사, 선불미운영) 불필요가 높음
 - 이용자 연령, 소득, 지역 전반적으로 의무화 찬성이 매우 높음(9:1)
- (피해현황) 이용자의 피해에도 미조치 수준 높고, 보상받기 어려움
 - (피해, 보상조치) △피해경험 있음 16.5%(없음 83.5%), △피해 후 조치 31.7%(미조치 68.3%), △일부-전액 보상 43.0%(미보상 57.0%), △피해의 70% 이상 수준 보상 70.5%(60%수준 이하, 29.5%)
 - 여성 71.7%, 60대 이상 81.3%가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음으로 응답

□ 조사결과

체육시설	내용
선불이용료 제공 현황	미운영 54.7% 운영 45.3%
선불이용료 기간	3개월 95.3% 6개월 82.8% 12개월 64.9%
기간별 할인율	12개월 31.4% 9개월 24.8% 6개월 20.7%
고객선호 기간	3개월 80.7% 6개월 12.1% 12개월 5.4%
시설 이용료 결제 방법	선불이용 63.3% 월 결제 36.7%
선불이용료 매출 비중	70-90% 37.3% 90% 이상 21.9% 50% 미만 21.3%
선불이용료 미운영 이유	시설과 맞지 않음 63.9% 고객 비선호 17.1% 요금할인 불가 9.9%
-	-
-	-
-	-
보증보험필요성	필요하지 않음 71.5%
-	-
보증보험료 부담자	업주·이용자 공동 부담 61.6% 이용자 21.5% 사업주 15.5%
보증보험 의무화 찬성 여부	의무화 반대 63.5% 찬성 36.5%
의무화 반대 이유	선불이용료 해당 없음 48.8% 없어도 문제 없음 20.7% 보험료 부담 8.0%

이용자	내용
선불이용료 이용 경험	경험 있음 86.2% 경험 없음 13.8%
결제 선호 기간	3개월 62.5% 6개월 20.3% 12개월 12.6%
이용 목적	이용료 할인 76.7% 월결제 번거로움 8.8% 지속 참여 동기부여 7.2%
-	-
-	-
-	-
미이용 이유	목돈 지출 부담 43.1% 지속 참여 어려움 33.5% 업체 폐업 우려 18.4%
피해 경험	피해경험 있음 16.5% 없음 83.5%
피해 후 조치	조치없음 68.3% 신고 등 조치 31.7%
피해 보상 현황	일부-전액 보상 43.0% 받지 못함 57.0%
피해 보상 수준	피해 100% 이상→9.8% 피해 70% 수준→24.6% 피해 80%→23.0%
보증보험 필요성	필요 91.0%
불필요 이유	보험료 부담 12.2% 절차/번거로움 증가 11.1% 단기결제만 이용 11.1%
보증보험 부담자	사업주 62.9% 업주, 이용자 공동부담 30.8% 이용자 부담 6.3%
보증보험 의무화 찬성 여부	필요 89.3% 불필요 10.7%
-	-

[참고자료3] 보증보험(자료: 문체부)

○ 보증보험의 의의

- 목적 :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
즉, 보증보험사와 채육시설업자가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휴폐업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채육시설 선불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보험
- 보증보험의 법령상 근거

구분	주요 내용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 :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을 포함한다), 다. 자동차보험, 라. <u>보증보험</u> , 마. 재보험,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 제3보험업 :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험, 다. 간병보험,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상법」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보증보험 및 일반 손해보험의 특성 비교

구분	보증보험	일반 손해보험
목적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특정한 유체물에 대한 불확정적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
보험 사고 성격	○보험사고의 인위성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담보)	○보험사고의 우연성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면책)

○ 보증보험 관련 유사 입법례

- 항공사업법

제30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등) 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비행훈련업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공제(共濟) 또는 영업보증금(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비행훈련업자의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어선법

제31조의9 (보증보험 가입 등) ①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참고자료4] 체육시설업 현황 및 관련 규제

○ 체육시설업 현황 (자료: 문체부)

등록업	신고업
(3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법 제10조제1항제2호)	(17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법 제10조제1항제2호) 체육도장업(7종) :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 (법 제10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6조 [별표2], 시행규칙 제6조)

- 등록·신고 체육시설업(민간 체육시설) : 67,205개소

총계(개소)	등록체육시설업				신고체육시설업
	계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업	
67,205	549	530	14	5	66,656

- 신고체육시설업 총 66,656개소

구분	업소수 (개소)	비율 (%)	구분	업소수 (개소)	비율 (%)
합계	66,656	100.0	종합체육시설업	299	0.45%
체육도장*	16,126	24.19%	인공암벽장업	328	0.49%
당구장	15,477	23.22%	승마장업	122	0.18%
체력단련장	14,976	22.47%	썰매장업	115	0.17%
골프연습장	8,573	12.86%	무도장업	65	0.10%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골프,야구)	6,201	9.30%	빙상장업	49	0.07%
체육교습업**	2,874	4.31%	야구장업	38	0.06%
수영장업	891	1.34%	요트장업	17	0.03%
무도학원업	500	0.75%	카누장업	5	0.01%

* 체육도장 :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 교습업 :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30일 이상 교습행위 제공업)

○ 체육시설업 연혁 (자료: 문체부)

법률	등록업	신고업	계
제4106호 1989.3.31.	9종	40종	49종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경륜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권투·레슬링·유도·검도·태권도·합기도·육체미·우슈·요가·궁중무술·국술·태수도·국선도·원격도·킥복싱·활기도·수박도·격투기·화랑도·불무도·한무도·공권도·활법·왕도특수무술·특공무술·유술·통일무술·도봉술·회전무술·십팔기·십팔반무예), 볼링장업, 정구장업, 골프연습장업, 탁구장업, 롤러스케이트장업, 체력단련장업, 미용체조장업, 당구장업	
제4719호 1994.1.7.	9종	16종	25종
	*경륜장업, 합기도·육체미·요가·궁중무술·국술·태수도·국선도·원격도·킥복싱·활기도·수박도·격투기·화랑도·불무도·한무도·공권도·활법·왕도특수무술·특공무술·유술·통일무술·도봉술·회전무술·십팔기·십팔반무예, 정구장업, 미용체조장업 제외 **자동차경주장업, 테니스장업, 썰매장업, 에어로빅장업 추가		
제5636호 1999. 1.18.	9종	14종	23종
	*탁구장업, 롤러스케이트장업 제외		
제7629호 2005. 7.29.	3종	22종	25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추가		
제7913호 2006. 3.24.	3종	19종	22종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 제외		
제15767호 2018. 9.18.	3종	22종	25종
	*야구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합기도 추가		
제17267호 2020. 5.19.	3종	23종	26종
	*체육교습업 추가		
제17591호 2020. 12.8.	3종	24종	27종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 합기도),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인공암벽장업 추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업 규제 관련 근거 조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 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장구의 구비(具備)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24조의2(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및 제22조에 따른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한 때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제32조(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4.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营业을 한 경우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제3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2.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은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7.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 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참고자료5] 「약관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4.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5.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6.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

제20조(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제32조(벌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비자기본법」

제12조(거래의 적정화) ②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④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고시 제7조)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자 자신의 채무 이행을 중지하는 행위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제80조(시정조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1조(시정조치의 요청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물품등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할부거래법」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